태아 및 신생아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아 및 신생아]

태아와 신생아 단계에서 필요한 법령정보는 무엇일까요?

『태아 및 신생아』 콘텐츠는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와 태아 성 감별행위나 유전자검사 등 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신생아의 출생신고와 이름에 관한 준수사항, 태아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을 위한 각종 제도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합니다.

태아 및 신생아 1
1. 태아 4
1.1. 태아의 권리능력 4
1.1.1.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4
1.2. 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5
1.2.1. 태아 성(性) 감별 행위 5
1.2.2. 인공임신중절수술 6
1.2.3.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8
1.3. 태아 보호를 위한 임산부 지원 9
1.3.1.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9
1.3.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10
2. 신생아 13
2.1. 신생아의 출생신고 13
2.1.1.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13
2.1.2. 자녀의 이름 15
2.2.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17
2.2.1.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17
2.2.2. 신생아 영양관리 20
2.3. 신생아의 양육지원 21
2.3.1. 전문 인력 지원 21
2.3.2. 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22

1. 태아

1.1. 태아의 권리능력

1.1.1. 태아에게 인정되는 권리

태아의 권리능력이란?

"태아"란?

▪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 ※ "배아"와의 비교
>
>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태아의 권리능력

▪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
>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
>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
>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예시)

구분	근거규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인지	부(父)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유류분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유증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유족급여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5항)
보상금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제2호 및 제30조제3항)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

※ 인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출생 관련 신고-인지신고하기-인지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 <상속 자격과 순위-상속인 알아보기-상속인 개념과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속』 <유류분반환청구-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유언』 <유언효력-유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태아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1.2.1. 태아 성(性) 감별 행위

태아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성(性) 감별 행위의 금지

▪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안 됩니다(「의료법」 제20조제1항).

> ※ “의료인”이란?
>
>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의료법」 제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의료법」 제88조의2제1호).

> **※ 임신 32주 이전 성(性) 고지 금지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2.28. 선고 2022헌마356 전원재판부 결정)**
>
> 「의료법」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 가족 및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해당 조문은 2024. 2. 28.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을 받아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
>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하여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이는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거나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법수단으로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

1.2.2. 인공임신중절수술

인공임신중절수술의 예외적 허용

허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허용사유
1. 본인이나 배우자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풍진, 톡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허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 임신 24주일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을 것
  - √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처벌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시한의 도과에 따라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2021. 1. 1.부터 자기낙태행위와 의사의 낙태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9조 및 제270조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전 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 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1.2.3. 유전자검사 및 유전자치료

태아 유전자검사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및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진단·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5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7호).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 유전자치료

유전자치료 금지

▪ 유전자치료를 태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5호).

▪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제2호)과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태아 보호를 위한 임산부 지원

1.3.1.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 목적

▪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제공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지원 대상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지원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비용 지원 범위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지원 금액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본문).

구분	금액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 다만, 다태아를 임신·출산하는 경우 및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단서 및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구분	금액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태아 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 60만원, 3태아: 160만원 등)
분만취약지 추가지급 대상	20만원 추가 지급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임신/출산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참조]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지원-임신/출산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와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진료비 지원받기-건강보험 진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6면).

분류	기 준
대상 구분	• 영유아 : 0~5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가능)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68면, 73면 및 84면).

> ※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정책-건강-건강증진>과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61면 참조).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 ※ 아래의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여성·어린이 특화사업)」 12면, 13면 및 17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목적

▪ 엽산 부족으로 인한 신경관 결손으로 유·사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예방하고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태아사망 및 산모사망 등을 예방하여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구분	대상
엽산제	보건소 등록 임산부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구분	내용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분의 엽산제(1인 1개월분 기준 최대 3개월분)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1인 1개월분 기준 5개월분)

※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자의 태아검진 시간 허용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1항 및 제11조제1항).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제2항).

2. 신생아

2.1. 신생아의 출생신고

2.1.1. 출생신고 및 출생통보제

출생신고

"출생신고"란?

▪ "출생신고"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정부24-출생신고).

> ※ "신생아"란?
>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합니다(「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

출생신고 의무자

▪ 출생신고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구분	내용
혼인 중 출생자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
혼인 외 출생자	·모(母)가 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 여자와 남편이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지 않은 이 조항이 혼인 외 출생자의 태어난 즉시'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3.23. 선고 2021헌마975 전원재판부 결정).
제3자에 의한 신고	·부(父) 또는 모(母)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 위의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신고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출생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시에 있어서는 신고 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신고기간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 인터넷 신고
>
> · 출생신고는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2호).
>
> · 출생신고의 인터넷 신고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고객센터-사이트이용안내-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출생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 그 밖에 출생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출생 관련 신고-출생신고하기-출생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란?

▪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통보로 아동의 출생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이 살해·유기·학대되는 등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법무부 보도자료(2023. 6. 30.)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참조].

출생정보의 기재 및 제출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출생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출생자 모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제1항).

- 출생자의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모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
- 출생자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 출생자의 출생 순서
- 출생자가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2항).

출생사실의 통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에 따라 출생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출생자 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을 말함)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

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등록

▪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 신고기간(출생 후 1개월 이내) 내에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제1항).

▪ 출생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출생신고의무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 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2항).

▪ 시·읍·면의 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사실을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제3항).

- 출생 신고의무자가 위의 최고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출생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2.1.2. 자녀의 이름

자녀의 성(姓)과 본(本)

원칙적인 경우

▪ 자녀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부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2항).

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3항). 여기서 부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을 알 수 없는 때를 말합니다(「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본문 참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합니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4항).

혼인 외의 출생자인 경우

▪부를 알 수 없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성과 본에 관해 「민법」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민법」 제781조제3항),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같이 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본문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제3항 참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자녀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5항 및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8조).

>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가족관계 등록』 <개명신고 및 성·본 변경신고-성·본 변경신고하기-성·본 변경신고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이름에 인명용 한자 사용 관련 준수사항

인명용 한자의 사용과 범위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항).

-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위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자는 위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봅니다.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이 권고됩니다(「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제1항).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제3항 및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제3항).

인명용 한자 적용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1호].

-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다만, 종전 이름의 문자가 오자(誤字)나 속자(俗字)인 경우에는 그것을 정자(正字)로 정정한 것에 한해 인정됩니다.
-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지난 자녀에 대해서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자녀의 이름에 관한 기타 준수사항

부 또는 모 등과 동일한 이름

▪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 이상 있으면 이름을 특정하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은 출생자에 대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드러나는 사람(예를 들어, 출생자의 조부·조모·부·모 등)과 같은 이름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2호).

이름의 기재문자 수

▪ 이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

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2.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중의 자에 대하여 모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3.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나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을 함에 있어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글과 한자의 혼합표기

▪ 성명란의 한자란에 한글과 한자(인명용 한자의 제한 범위내의 것)를 혼합하여 표기한 출생신고 등은 수리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5호).

2.2.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2.2.1. 신생아 검사비용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의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35면).

>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란?
>
> 우리 몸의 생화학적인 대사 경로를 담당하는 효소나 조효소의 결핍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꼭 필요한 최종 물질이 생성되지 못하여 결핍 증상이 나타나고 불필요한 전구물질은 다양한 중요 장기에 축적되어 지능 장애와 같은 과잉 증상을 일으킵니다.
>
> <출처: 서울대학교병원 홈페이지(http://www.snuh.org)-건강정보-N의학정보 참조>

※ 아래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69~471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소득 기준 없음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소득 기준 없음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 내용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 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특수식이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환아 관리

▪ 지원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그 밖의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소득기준 무관)

▪ 대상 질환 및 지원 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 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그 밖의 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검사비 지원의 목적

▪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 최소화하고자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35면).

> ※ 아래의 신생아 난청검사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496~498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선별 검사비 • 확진 검사비
·소득 기준 없음

지원 내용

선별 검사비	확진 검사비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다만,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지원 절차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상 영아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 후 관할보건소로 이송하여 처리 및 지급 결정이 가능합니다.

환아 관리

▪ 지원 대상

▹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가 대상입니다.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이며 보청기 2개가 지원됩니다.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이며 보청기 1개가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가 지원됩니다(개당 135만원 한도).

> ※ 그 밖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출산-아기 건강 챙기기-의료비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신생아 영양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임신·출산·수유로 인해 영양 측면의 위험성이 높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의 건강과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4면].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 중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의 관할 지역 내 거주하면서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46면).

분류	기 준
대상 구분	• 영유아 : 0~5세(생후 72개월)까지 • 임신부 • 출산·수유부 * 사업 참여 중에 유산 혹은 사산한 여성도 출산부의 범주에 포함
거주 기준	• 사업운영 보건소 관할지역 내 거주자 * 국제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최소 1인 이상은 한국 국적이어야 함 * 본 사업은 가정단위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 가능)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지역의 여건에 따라, 소득판정 기준치 하향 조정 가능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영양상태 평가·관리, 영양교육·상담 및 보충식품패키지(6종)를 제공합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68면, 73면 및 84면).

> ※ 영양플러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정책-건강-건강증진>과 이 사이트 『임산부』 <임신-임산부 건강챙기기-영양플러스 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보조금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안내(영양)」 61면 참조).

2.3. 신생아의 양육지원

2.3.1. 전문 인력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 ※ 아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은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3면, 33면 및 55면을 참고하였습니다.

지원 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예외지원 대상
>
> 기본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산모 신체 상태 조사, 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청결관리, 수유지원 등), 산모 정보제공(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등), 가사활동 지원(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및 세탁 등), 정서지원 등이 있습니다.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산부』 <출산-산후조리하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근로자인 양육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 본문).

단축 후 근로시간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3항).

단축 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대상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의 사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이하 "단기 육아휴직"이라고 함)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본문).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본문).

> ※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 보육』 <영유아 보육 지원-육아 근로 지원-육아휴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